

'26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초당대학교 자체 선발 기준

I. 2026학년도 근로장학생 선발 기준

가. 교내·외근로 선발 기준(공통)

1)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수

가) 성적: 직전 정규학기 C°(70점/100점) 이상(단, 신·편입생 및 재입학생 등은 미적용)

나) 소득: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확인자

2) 자격요건 충족 이후 아래 순위에 따라 선발

선발 순서	선발 기준
우선선발대상자	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·탈북가정자녀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, 부모 중 장애인·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 청년, 청소년쉼터 퇴소학생, 가족돌봄청년
1순위	기초생활수급자~4구간
2순위	학자금 지원구간 5~6구간
3순위	학자금 지원구간 7~9구간
학자금 지원구간 동순위일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순서로 선발) 직전 정규학기 미선발자 직전 정규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많은 자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총 이수학점이 많은 자 학년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
기타 요건	선발하고자 하는 장학생 수의 30% 범위 내에서 행정부서장 또는 학과장이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음(단, 해당부서 학과에만 추천 가능하고 행정부서장 및 타 학과장이 타부서와 타학과에 추천 불가, 교외근로 포함)
직전학기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 장학생 수의 60% 미만이 될 경우	<p>직전학기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 장학생 수의 60% 미만이 될 경우 아래 순서대로 탈락하고, 직전학기 근로하지 않은 학생으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(단,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학기 근태/근로 불량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높은 자 재학 중 총 근로시간이 많은 자 차수가 낮은 자 직전학기 정규학기 평점평균이 낮은 자 직전학기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적은 자

3) 선발 제외 대상

가) 근로 업무별 부적합, 과거 근태·근로불량자·부정근로자(직전 학기 출근부 미제출자 포함, 직전 학기 선발 이후 일주일 이상 근로 미참여) 등은 선발 제외

* 근로지와 협의 하여 근로 시작 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예외, 근로 시작 일자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는 경우 자동 탈락 및 차 순위자 선발

나) 개인 사정 및 학과 실습 등의 사유로 인해 대학 및 근로지 담당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선발 취소

2. 교내근로 봉사유형

가. 봉사유형(장애대학생 지원)

1) 선발 기준: 순위 방식

가) 1순위: 장애대학생과 같은 학과, 수업학생 또는 생활관 학생 중 장애대학생이 희망하는 학생 선발

나) 2순위: 장애학생지원센터 면접 후 최종 선발

1순위	2순위
장애대학생 희망 여부	면접

나. 장애대학생 선발 기준 세부

1) 선발 기준: 순위 방식

가) 1순위: 장애증명서에 명시된 장애정도

나) 2순위: 장애증명서에 명시된 장애유형

다) 3순위: 장애학생지원센터 면접 후 최종 선발

1순위	2순위	3순위
장애정도	장애유형	면접

II. 2026학년도 근로장학생 배치 기준

1. 교내·외 근로 배치 기준(공통)

가. 일반교내·외 근로: 선발된 학생 중 신청 근로지를 고려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

1) 배정기준: 구간별로 배점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

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		직전학기 선발 여부		평균성적 환산점수	
구분	배점	구분	배점	구분	배점
기초생활수급자	20	미선발	10	100 ~ 97	10
차상위계층	19	선발	5	96 ~ 93	9
1구간	18			92 ~ 89	8
2구간	16			88 ~ 85	7
3구간	14			84 ~ 80	6
4구간	12			79 ~ 75	5
5구간	10			74 ~ 70	4
6구간	8				
7구간	6				
8구간	4				
9구간	2				

2) 동점자 및 근무 희망지가 겹칠 시

가) 직전 학기 미 선발자

나) 학자금 지원구간 하위자

다) 성적 상위자 우선

2. 대체장학생 배정 기준

가. 근로장학생 활동포기 및 중지, 학기당 제한시간으로 인한 근로 종료 등에 따라 대체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

나. 대학 자체 신청자 중 미선발자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부서별 추천 혹은 차순위자선발(근로지에 부합하는 경우 차순위자 외에 선발가능)

다. 미선발자 대상 선발 중 근무 비희망자 발생 등의 이유로 원활한 대체 선발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대학 자체 추가 신청을 진행하여 대체 선발

3. 교내근로 추가 배정

가. 각 부서(학과)와 기관은 추가 근로장학생 배치를 원할 시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서류 발송

※ 필요 서류: 추천서, 추가 요청 사유와 근로학생 주요 업무 기재

1) 추가 배정 기준: 담당 부서와 협의 필요

2) 추가 배정 상한: 예산 내에서 결정

나. 서류 검토 후 기준과 상한 내 가능한 경우 추가 배치 가능

4. 교외근로 추가 배정

□ 교내근로 추가 배정의 기준과 절차와 동일, 교외근로는 추가 배치 인원 상한이 없음

근로장학생 추가 배치 절차		
근무지에서 추가 배치 요청 필요 서류 발송	담당자 검토	근로장학생 추가 배치